

문서관리번호	BRM-인사-A07
최초작성일	2024.04.01
최종수정일	2024.05.01
관리담당	인사총무팀

(유)비알엠 공정거래 준수규칙

2024. 5.

목 차

1. 제 1장 총칙	3
2. 제 2 장 책임과 권한	3
3. 제 3 장 운영절차	4
4. 부칙	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유)비알엠(이하 '회사')의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준수"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말한다.
3. "공정거래 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기준 및 실행방안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4. "공정거래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정거래준수주관부서"는 CP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를 말한다.
6. "공정거래 실시책임자"(이하 '실시책임자')는 각 부의 장으로, 해당 부의 공정거래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책임과 권한

제 4 조 【공정거래 준수관리자의 선임】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CP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 5 조 【공정거래 준수관리자의 직무】

공정거래 준수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공정거래 준수편람 제작 및 관리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CP와 관련된 교육 관리
4. CP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CP 위반사항 조사
5.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6. 기타 CP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 6 조 【공정거래 준수 주관부서의 업무】

공정거래 준수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공정거래 준수 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실시책임자】

실시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소속 부의 CP 실시 상황 및 이행 여부 점검
2. 공정거래 준수관리자 CP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

제 3 장 운영절차

제 8 조 【업무의 독립성 보장】

1. 회사는 공정거래 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집행의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보직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임직원의 의무】

1.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준수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공정거래 준수 관리자가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대상자인 임직원은 교육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정거래 준수 의지 선언】

1.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준수 실천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의 공정거래 준수 실천 의지 선언은 당사의 임직원은 물론 협력사 등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자메일,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한다.

제 11 조 【공정거래 준수 편람】

1.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준수편람을 제작하여 회사 전 부서에 공지해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는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 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정거래 행동】

회사의 임직원은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1.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3.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4. 고객, 파트너, 협력사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사무처리를 위해 세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7. 협력업체와 공정한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3 조 【교육의 실시】

1.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위험이 높은 직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2)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 3) 자율준수 관련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 4) 기타 임직원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4 조 【모니터링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 운영현황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 15 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1. 회사의 임직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회사의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제보하여야 한다.

2. 내부제보자의 제보와 관련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 16 조 【시정 및 징계 요구】

1.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3. 인사담당부서는 제재조치의 결과를 공정거래 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포상】

1.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 상벌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2) 공정거래 교육 이수 우수자
- 3) 공정거래 준수프로그램 우수 제안자
- 4)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추천하는 자

2.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은 자율준수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문서관리】

1. CP에 관한 문서들은 공정거래 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관한 업무수행 시 발생한 모든 문서는 보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보존 기간은 회사 문서관리 규정을 따른다.
3. 기타 문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산 문서규정 및 문서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0 조 【보칙】

공정거래 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령】

이 규정은 202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